



수신

(경유)

제목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알림(물위)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충주시 호로 신청한 충주시 상의 공작물(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발행위 허가내역

허가 번호	소재지		지 목	수평투영 면적(m ²)	중량 (ton)	사업기간	사업목적	수허가자
	읍면동	지번						
2021-118		(건물위)	공장	1,600.2	36.0	2021.11.허가일 ~ 2023.10.31.	공작물 설치 (태양광 발전시설)	

1) 허가 이행조건

- 면허세 금22,500원을 납부하여야 함.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은 수허가자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함.
- 사업계획을 반영한 구조 안전확인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함.
- 주변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을 강구하고, 허가기간 내 반드시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나. 건축설비 협의내역

- 태양광 발전설비 탈락 및 유지관리 공간 등을 고려하여, 옥상난간(벽) 내측에서 50cm 이상 후퇴, 옥상 등 바닥면에서 5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함.
-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물에 대하여 안정한 구조이어야 함.
-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 20m 이상인 경우 피티침 설치 또는 피뢰 설비기능을 확보하여야 함.

다. 환경관련 협의조건

- 사업의 시행에 따른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서

관리 번호

신청인	상호(법인명)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발급대상 설비	발전소명			
	소재지	27827 충청북도 충주시		
	전력공급처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국전력공사 <input type="checkbox"/> 한국전력거래소		
	용량(kW)	667.06	면적(m ²)	0
	발전사업허가번호	충북 충주		
	계약번호 (발전기코드)			
	사용전결사용인수 발행번호	제 221:	사용전결사일	2022.09.28
	에너지원	태양광	REC 발급개시일	2022.10.31
	ESS 연계	N	피크 가용치	0
	ESS 계약번호 (상업용전계시일)		적용가용치	1.6

위와 같이 공급인증서 발급대상에 대하여 설비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2.12.21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주의사항 : 이 설비확인서에 적용가용치 총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공급인증서(REC) 매매계약서 [자체]

계약자	구 매 자	상 호 명	GS동해전력		사업자등록번호	[REDACTED]
		대 표 자	[REDACTED]	전 화 번 호	[REDACTED]	[REDACTED]
		주 소	[REDACTED]			
	판 매 자	발 전 소 명	[REDACTED]	사업자등록번호	[REDACTED]	[REDACTED]
		대 표 자	[REDACTED]	전 화 번 호	[REDACTED]	[REDACTED]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REDACTED]			
		설비 현황	에 너 지 원	태양광 건축물	설 비 용 량	337.05kW
	소 재 지		27327 충청북도 충주시 [REDACTED]			
	예상가중치		1.5	발전사업허가번호	충북 충주 [REDACTED]	
	설비코드		[REDACTED]	발전사업허가일	2021년 09월 08일	
계약 내 용	계약종류	자체계약		ESS계약여부	기억분 []/ESS분 []	
	계약서 상의 계약일 (최초계약일)	2022년 06월 30일				
	계약기간	2022년12월 부터 ~ 2042년11월 까지				
	계약단가	[REDACTED]				
	공급인증서 매매량 (예상)	664REC/년 * 연평균 가동율 기준의 예상전력량에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치				
	계약보증금	[REDACTED]				
	SPC 여부	SPC적용 []				
	REC 매매방식	비율 [√] [매매율 :100%]				
<p>매수자와 매도자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판매 및 구매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3년 01월 03일</p> <p style="text-align: center;">구 매 자 GS동해전력 전자서명 판 매 자 주식회사 [REDACTED] 전자서명</p>						
계약보증증권	제출 [√]	면제 []				
<p>* 필수 첨부서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도자 : 설비확인서(별지포함), 사업자등록증, 발전사업허가증, 계약보증증권 - 매수자 : 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p>* 참고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 계약서에 입력된 거래조건에 따라 REC 거래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위 거래조건 이외 거래는 불가하며, 일반(특수)조건 등과 상충 시 본 계약서가 우선한다. 2. 위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발전 원의 REC는 현물거래가 금지된다. 3. 100kW 이상 설비의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는 공급인증서 매도자가 부담하며, 거래수수료는 쌍방이 각각 부담한다. 4. 설비의 양도양수시 반드시 매수자에게 통보하여 매수자는 양수인과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미준공(설비확인서 미발급)상태 양도양수시도 동일하다. 5. REC채권의 양도·양수시 반드시 매수자에게 통보하여 계약당사자간 계약이 확고 없이 이행되도록 한다. 6. 계약기간은 계약서상의 계약일로부터 시작된다. 단, 계약일 이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상업운전 개시일로부터 시작한다. 7. 소수점 이하 REC에 대해 단일계약일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되며, 다중 계약일 경우 비율이 높은 계약으로 우선/순차적으로 배분된다. 8. 계약당사자는 상호이익을 존중하되 계약상의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를 추구하며, 계약사실에 대한 분쟁 발생시 분쟁이 확정적으로 해결된 후 이에 대한 결과를 공급인증기관에 고지한다. 						